

(재)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예산
출연안



구 미 시

(재)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예산 출연안

의 안 번 호	
--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22. . .
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제안이유

- 가. 구미시 푸드플랜 사업을 추진하고, 생산·가공·유통·체험·관광 등 지역 생산-지역소비 추진을 위한 공익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푸드플랜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고자 중간지원조직 구성
- 나. (재)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2023회계연도 구미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출연 여부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출연 개요

- (1) 출연기관 : (재)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
- (2) 대 표 자 : (재)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이사장 김장호
- (3) 소 재 지 : 구미시 선산읍 선산중앙로 83-2, 3층 사무실
- (4) 출연금액 : 금6억원
- (5) 출연근거
 -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
 -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0조
 - 「민법」 제32조
 - 「재단법인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6조

나. 주요 사업

(1) 농산물 기획생산 및 연중공급 체계 구축 등 지역농업 재편사업

- 연중 다품목 생산-공급을 위한 기획생산 및 농가조직화 구축
- 지역농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구조 개편 및 농업생산 지속을 위한 생산 농가 교육 등 각종 사업 추진

(2) 로컬푸드 육성 및 직매장, 가공센터 운영 등 지역농산물 이용 및 유통경로 다각화

- 직매장 운영을 통해 지역 농산물의 효율적인 유통 구조 개선을 위한 장을 마련하고 고령농, 중소농, 영세농의 안정적인 유통망 확보를 통한 소득 창출로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체계를 마련
- 농산물 가공센터 운영을 통한 소비시장의 요구와 먹거리 다양성을 확보하여 농민의 부가가치를 증대

(3) 학교급식·공공급식 활성화

- 공급·물류·배송을 통합 관리하고 지원함으로써 공공영역의 먹거리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, 구미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실현
-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공급을 통한 급식의 고품질화 및 안전성 확보

다. 출연의 필요성

(1) 구미시 푸드플랜 수립에 따른 추진 기반 및 동력확보

- 구미푸드플랜은 먹거리와 관계된 농식품의 공급과 지역경제,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결합해 나가야 하므로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보한 재단을 설립하여 통합적인 관리·운영 필요

(2) 유통체계 개선과 안정적인 출하처를 확보하여 농업인 소득증대

- 직매장, 학교급식, 복지급식 등 재단 운영사업을 통해 지역농축산물의 안정적인 출하처를 확보하고 유통단계를 줄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고정수입 보장

(3)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신뢰형성 및 안전한 먹거리 공급 등 주민복지 증진

-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 공급하여 주민 복리를 증진하고 잔류농약 검사 등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통한 소비자 신뢰 구축

(4) 지역 식품가공산업 육성, 공공급식 확대 등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

- 지역산 원물을 활용한 식품가공산업 육성 및 공공급식 확대로 생산-가공-유통-소비 순환에 따른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부가가치 제고

라.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

- '21. 3. 9. : 재단법인 초대 임원(이사, 감사) 구성 완료
 - ※ 이사회 구성 : 7명(이사장, 센터장, 이사 3, 감사 2)
- '21. 4. 29. : 재단법인 발기인총회
 - '21년 사업계획 및 예산서, 정관 및 내부규정 등 심의·의결
- '21. 7. 1. : 재단법인 주무관청(경북도) 설립 허가 및 등기 완료
- '21. 8. 18. : 재단법인 경력직 직원 채용(4명)
- '21. 10. 5. : 재단법인 출범 및 업무 개시
- '21. 12. 21. : 로컬푸드 직매장 금오산점 기공식 추진
- '22. 1. ~ : 농가 교육 및 농가 조직화
- '22. 8. 1. : 2022년 경력직 신규직원 채용
- '22. 9. 15. : 2022년 기간제 근로자 직원 채용

마. 출연금 내역(2023년)

(1) 출연 예산액

(단위 : 천원)

사 업 명		2022년 예산액	2023년 예산액	증감액	비 고
(재)구미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출연금	계	800,000	600,000	△200,000	
	인 건 비	396,931	470,658	73,727	
	운 영 비	125,192	96,342	△28,850	
	사 업 비	277,877	33,000	△244,877	
	출연금	-	-	-	

(2) 2023년도 출연금 세부내역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22년 예산액	2023년 예산액	증감액	비 고
합 계	800,000	600,000	△200,000	
인건비 소계	396,931	470,658	73,727	
인건비	396,931	470,658	73,727	정직원(7) 직매장 기간제(5)
운영비 소계	125,192	96,342	△28,850	
일반운영비	82,192	85,942	3,750	
여비	19,000	8,400	△10,600	
업무추진비	2,000	2,000	0	
자산취득비	22,000		△22,000	
사업비 소계	277,877	33,000	△244,877	
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활성화				직매장 개장 지연으로 인한 사업비 이월
└ 직매장 행사 개최 (개장식, 김장행사 등)	102,877	-	△102,877	
└ 농산물 안전성 검사	60,000	-	△60,000	
└ 포장재 지원	85,000	-	△85,000	
└ 출하관리 및 생산체계 구축	3,000	-	△3,000	
└ 도농상생 농기체험 프로그램 운영	5,000	-	△5,000	
재단법인 경영평가 용역	22,000	33,000	11,000	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(1)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
- (2)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0조
- (3) 「민법」 제32조
- (4) 「재단법인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6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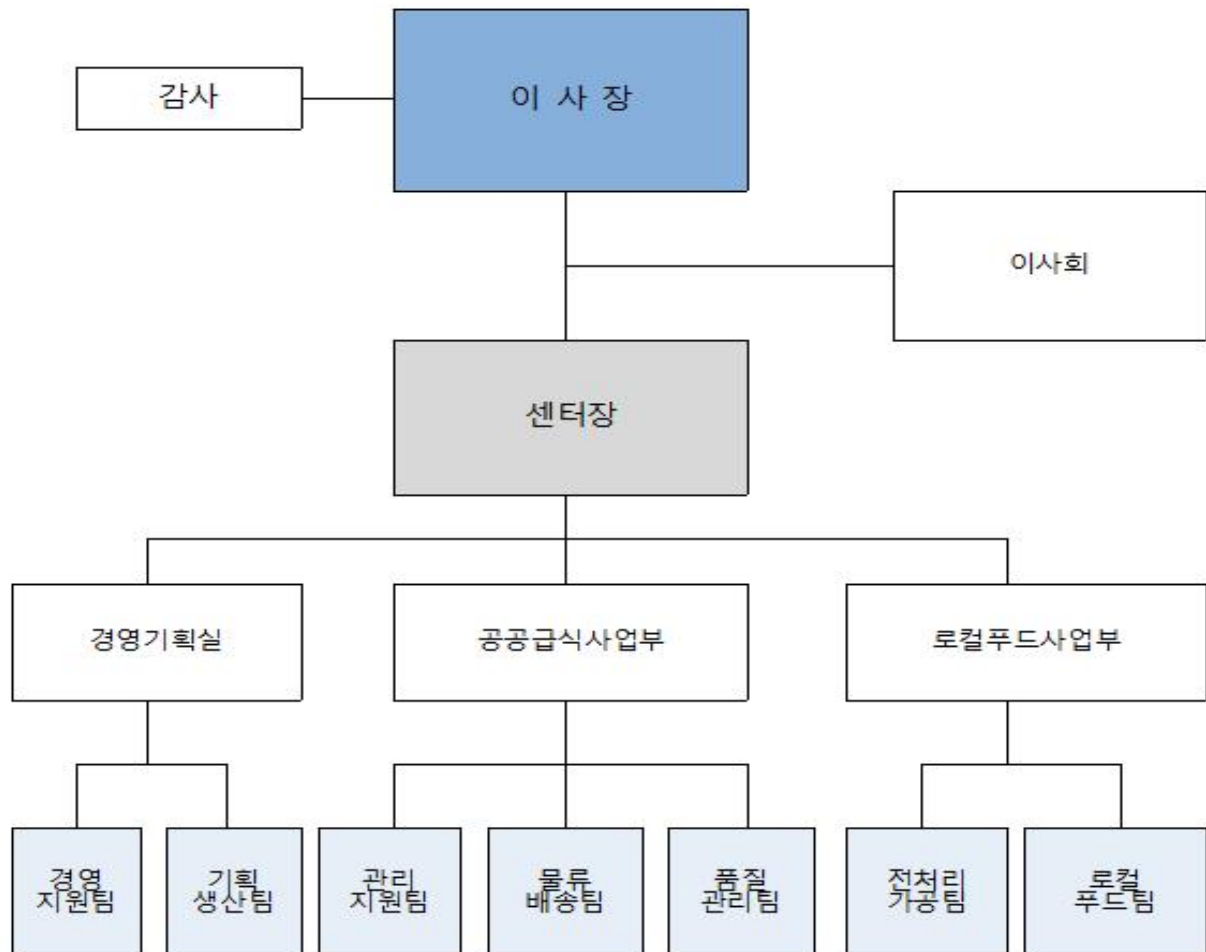
나. 예산조치 : 2023년도 예산편성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(재)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최종 조직구성 및 업무분장(붙임)

[붙임]

〈(재)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최종 조직 구성〉



구 분	총 계	센터장	직 원					기타
			소계	1실 2부장	팀 장	대 리	사 원	
인 원 (현원)	50 (7)	1 (1)	49 (6)	3 (-)	7 (2)	10 (4)	29	

※ 직위 및 직급 : 센터장(5급), 실장 및 부장(6급), 팀장(7급), 팀원(8~9급)

〈업무 분장〉

구 분	분 장 사 무
이사장	- 재단법인 대표이사 및 업무총괄
센터장(1)	-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사업부문 실무총괄
경영기획실장 (1)	- 센터 운영 기본방향 및 종합계획 수립 - 현안 조사, 분석, 대책 수립 - 센터 실무 및 시설관리 총괄
공공급식사업부장(1)	- 급식사업부 사업관리 - 관리지원, 물류배송, 품질관리 실무 관리
로컬푸드사업부장(1)	- 상품화 과정 사업관리 - 전처리가공, 로컬푸드사업 실무 관리
경영지원팀 (3)	- 센터 운영 및 자산관리 -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 사무관리 - 지출·계약 등 회계업무 - 예산회계·직원복무 등 - 급식센터 인증 및 계약, 행정 사무 등 - 네트워크 강화 프로그램 운영
기획생산팀 (4)	- 기획생산 농가 조직화 - 생산관리 - 안정성 관리
관리지원팀 (6)	- 학교 및 공공기관 수주·발주 관리 - 공공영역 홍보 및 관리 - 통합 전산시스템 관리 - 가공품 수주·발주 관리 - 공공영역 기타 사업 관리 - 급식센터 시설 및 위생관리
물류배송팀 (10)	- 통합전산시스템 관리 - 수주·발주 관리 - 식재료 품질기준 표준화 - 식재료 단가조사 - 원물 발주 및 수집관리 - 클레임 관리 - 통합물류 및 배송인력 관리 - 식재료 배송 및 순회수집 - 차량관리 및 점검
품질관리팀 (9)	- 식재료품질 검수 - 농산물 소분·소포장
전처리가공팀 (8)	- 학교급식 농산물 전처리 - 가공식품 농산물 전처리 - 농산물 가공
로컬푸드팀 (6)	-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 -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지원
기 타	- 신규업무는 센터장이 연관 주무부서로 사무분장 수행

관 계 법 령

□ 「지방재정법」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□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
제20조(재정 지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·출연 기관에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
□ 「민법」

제32조(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) 학술, 종교, 자선, 기예,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.

□ 「재단법인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

제6조(기본재산의 조성)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.

② 시는 재단의 설립·시설·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.

소 관 부 서		유통특작과
입 안 자	과 장	강 구 섭
	담 당	주 석 진
	담 당 자	조 장 희 (480-5922)